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69 발의연월일: 2020. 7. 22.

발 의 자: 박덕흠 · 김태흠 · 김기현

김예지 · 김용판 · 추경호

박성중・서범수・홍문표

김도읍 • 백종헌 의워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서울특별시·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(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제외)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,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,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, 소멸위험지수가 0.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

5조의2 신설).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5조의2(특례군) ① 농어촌 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군(이하 "특례군"이라 한다)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특례를 둘 수 있다.
 - 1. 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것
 - 2. 군의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일 것. 이 경우 재정자립도는 {(지방세+세외수입-지방채)÷일반회계예산}×100으로 산정한다.
 - 3. 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.5 미만일 것. 이 경우 소멸위험지수는 20 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.
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75조의2(특례군) ① 농어촌 군
	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
	충족하는 군(이하 "특례군"이라
	한다)의 행정, 재정운영 및 국
	<u>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하여는 그</u>
	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
	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
	<u>수 있다.</u>
	<u>1. 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</u>
	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
	<u>초과할 것</u>
	2. 군의 재정자립도가 농어촌
	군 전체의 평균 미만일 것.
	이 경우 재정자립도는 {(지방
	세+세외수입-지방채)÷일반회
	계예산}×100으로 산정한다.
	3. 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.5 미
	만일 것. 이 경우 소멸위험지
	수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
	성인구수를 65세 이상의 인구
	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.
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
	지원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

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